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08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김문수ㆍ이수진ㆍ김남근

조계원 • 민형배 • 박지원

문금주 • 이광희 • 김우영

허성무 • 주철현 • 박해철

한준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군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그러나 현대전의 복잡성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장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또한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역할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 는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 교과과정이 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미래의 장교 인 사관생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깊이 인식하 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군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는 역 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법률 제 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 사고능력 및 건전한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교과) ① (생 략)	제4조(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	②
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u>한다</u> .	<u>ই</u> ট্য,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
	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 사고능
	력 및 건전한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여
	<u>야 한다</u>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